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8일, 남인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남인순 의원)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

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

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의서면 없이도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부족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는 개인의 재산 상황

과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금융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 간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용 목적, 보관 기관, 열람 권한 및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 제8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기관등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금융기관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은 금융정보등의 요청대상을 ‘금융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금융기관등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적극행정 면책 특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임용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로서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 직권 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연계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직권 신청은 대상자의 민원 제기, 개인정보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당 공무원은 이에 따른 감사·징계·소송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담당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둘 필요도 있

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